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1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5월 7일, 박양숙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양숙의원)

-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주체이며, 청소년들의 미래가 곧 우리사회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청소년시설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등에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을 확대하며 청소년시설협회 사업과 시설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수련관 등이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대한 해당조항을 명확하게 하였고,

둘째, 조례 본문 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청소년시설협회”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청소년시설의 시설명, 기능,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을 확대하며 청소년 시설협회 사업과 시설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은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바,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 이는 청소년수련관 등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특성에 맞춰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감면하고, 그 감면대상에 대한 해당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은 본문 내용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청소년시설협회”로 수정하고 있는 바,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과 활동을 현실화 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활동’이외에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시설의 확대와 관련 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비교

구 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시설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영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차이점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외에 청소년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수련시설보다 광의의 개념임

- 한편, 〈별표1〉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시설명, 기능, 위치를 일부 조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청소년시설의 시설명, 기능, 위치 등이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내에 위치하여, 프로그램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조례에 규정되어 그 설립 운영의 근거를 규정한 것임.

〈표〉 시설별 조례 개정사유

구분	시설명	개소일	사유		내용 (조례개정이 지연된 사유 포함)
			기능 변경	주소 변경	
1. 청소 년수 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2006.9.1		0	대표지번 변경 (318-813-3)으로 공동사용 후 변경
2. 기타 청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 쉼터	1998.05.20	0		
	시립신림청소년 쉼터	1998.05.18	0	0	
	시립신림중기청소 년쉼터	2001.08.01			금천 신림쉼터의 프로그램 사업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시설로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음
	시립청소년일시 쉼터	2007.12.21			
	시립근로청소년 복지관	1982.12.17	0		
	시립청소년활동진 흥센터	1999.05.26	0		
	서울유스호스텔	2006.02.23	0		
	하이서울유스호 스텔	2011.03.02			신규 개관
	서울시대안교육 센터	2001.04.06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없고, 지자체 중 서울시에 유일한 시설이므로 지금까지 조례 규정이 어려웠으나, 최근 대안교육에 대한 공감 대가 높아 짐.
	시립광진청소년성문 화센터	2007.11.22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내에 위치하여, 프로그램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독 립시설로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음
	시립창동청소년성문 화센터	2007.10.19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 방상담센터	2007.07.25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 방상담센터	2009.04.21			
	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 방상담센터	2010.08.30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 방상담센터	2010.07.01				
시립중랑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999.10.30				
시립노원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998.01.21				
시립서대문청소년상담 지원센터	2007.03.19				
시립목동청소년상담 지원센터	2006.04.0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제4장 제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소년시설은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청소년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 상담활동, 특화사업의 활성화
4. 청소년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 소 년 수 련 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	종량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표동 27-1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광진구 광장동 313-3	
	시립종량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종량구 면목동 1382-10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마포구 성산동 373-1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강서구 화곡동 809-1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동 1428-12	
	시립신림중기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중장기보호	관악구 난곡동 646-222	
	시립청소년일시쉼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의 일시보호(고정형·이동형차량)	용산구 서계동 243-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주거안정 및 복지·능력향상 등 지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중구 수표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수련활동 인증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운영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대안교육센터	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안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강남구 삼성동 171-1	
	서울유스호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활동지원	중구 예장동 산 4-5	
	하이서울유스호텔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번지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광진구 광장동 313-3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서대문구 홍은2동 356-1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도봉구 창동 1-6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광진구 광장동 313-3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도봉구 창동 1-6	
	시립중랑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시설	중랑구 면목동 1382-10	
	시립노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서대문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목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양천구 목동 918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청소년에게</u>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li> <li>3 ~4. (생략)</li> <li>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li> </ol> <p>제4장 서울특별시 <u>청소년수련시설협회</u></p> <p>제12조(구성·운영) ① <u>청소년수련시설</u>은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u>(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3조(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인 <u>청소년수련시설</u>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li> <li>2. (생략)</li> <li>3. <u>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u></li> <li>4. <u>청소년수련시설</u>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li> <li>5. (생략)</li> </ol>	<p>제8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중 청소년</u></li> <li>2. ----- ----- <u>중 청소년</u></li> <li>3 ~4. (현행과 같음)</li> <li>5. ----- ----- <u>청소년</u></li> </ol> <p>제4장 ----- <u>청소년시설협회</u></p> <p>제12조(구성·운영) ① <u>청소년시설</u>----- ----- ----- ----- <u>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u>(이하 “시설협회”라 한다)----- ----- -----</p> <p>제13조(사업 등)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청소년시설</u>-----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청소년수련활동, 상담활동, 특화사업의 활성화</u></li> <li>4. <u>청소년시설</u> ----- -----</li> <li>5.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p>6. 그 밖에 <u>청소년수련시설</u>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p>② ~ ③ (생략)</p>	<p>6.-----<u>청소년시설</u>-----</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시설명	기능	위치	비고	
1.	청소 년수 련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광진구 광장동 318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u>일시보호</u>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 및 주거 생활지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포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 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 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		
개정안					
1.	청소 년수 련관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u>광진구 광장동 313-3</u>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u>단기</u> 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동 1428-12	
		시립신림중기청소년쉼터	<u>가출청소년의 중장기보호</u>	관악구 난곡동 646-222	
		<u>시립청소년일시쉼터</u>	<u>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의 일시보호(고정형·이동형차량)</u>	용산구 서계동 243-11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u>근로청소년 주거안정 및 복지· 능력향상 등 지원</u>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u>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u>	중구 수포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 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u>청소년 자원봉사, 수련활동 인증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운영지원</u>	<u>동작구 신대방동 395</u>	
		시립대안교육센터	<u>청소년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운 영 및 대안교육지원 네트워크 구 축 및 관리</u>	<u>서대문구 연희동 167-1</u>	
		시립청소년드림센터	<u>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u>	<u>강남구 삼성동 171-1</u>	
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u>교류·활동지원</u>	중구 예장동 산 4-5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u>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u>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 고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a href="#">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a>	<a href="#">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a>	<a href="#">광진구 광장동 313-3</a>	
	<a href="#">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a>	—	<a href="#">동작구 신대방동 395</a>	
	<a href="#">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a>	—	<a href="#">서대문구 홍은2동 356-1</a>	
	<a href="#">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a>	—	<a href="#">도봉구 창동 1-6</a>	
	<a href="#">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a>	<a href="#">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a>	<a href="#">광진구 광장동 313-3</a>	
	<a href="#">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a>	—	<a href="#">도봉구 창동 1-6</a>	
	<a href="#">시립중랑청소년상담지원센터</a>	<a href="#">청소년 상담 및 지원시설</a>	<a href="#">중랑구 면목동 1382-10</a>	
	<a href="#">시립노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a>	—	<a href="#">노원구 상계6동 772</a>	
	<a href="#">시립서대문청소년상담지원센터</a>	—	<a href="#">서대문구 연희동 167-1</a>	
	<a href="#">시립목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a>	—	<a href="#">양천구 목동 918</a>	